

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. 5. 10 선고 2022가단69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4. 12.

판 결 선 고 2023. 5. 10.

주 문

1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9분의 6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D(주민등록번호 2 생략), E(주민등록번호 3 생략) 사이에 각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9분의 4지분에 관하여 2022. 5. 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.

2. 피고는,

가.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9분의 6지분에 관하여,

나. D, E에게 각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9분의 4지분에 관하여,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남요섭

별지